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520
----------	-----

2024. 3. 22.(금)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이태훈 의원 등 7인
나. 제출일자 : 2024년 3월 4일
다. 회부일자 : 2024년 3월 6일
라. 상정일자 : 2024년 3월 14일
- 제41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이태훈 의원)

가. 제안사유

-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활성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부자
예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행사, 공모
전 등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행사 참여자 또는 공모전 수상
자에게 홍보물 등 기념품, 시상금 제공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기부자에 대한 예우 근거 및 내용 신설(안 제23조)
○ 기부제도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 근거 및 내용 신설(안 제24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서정호)

가. 개정 취지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한 기부자를 예우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행사, 공모전 등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행사 참여자 또는 공모전 수상자에게 홍보물 등 기념품, 시상금 제공의 근거를 마련하여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 및 효율적 운영을 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검토

○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안 제23조)

- 조례안 제23조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한 기부자를 예우하기 위하여 신설하는 조문으로 제1항에 예우 사항을 각 호로 규정하고 있음.
- 예우 사항은 다음과 같음.

제1호 기부자 우대를 위한 기부증서 발급
제2호 충청북도에서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등 감면
제3호 충청북도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 초청
제4호 그 밖에 기부자 예우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항은 예우대상, 기부증서 발급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을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
- 제3항은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지원 방안을 확보함.

- 또한 예우 사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에서 설치·관리하는 ‘조령산휴양림’, ‘청남대’를 방문하는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자에게 입장료, 관람료 등의 감면을 위해 부칙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있음.
- 입장료, 관람료 등 감면 내용

구분	감면 내용				
조령산 휴양림	[별표 2] 감면대상자에 고향사랑기부자 신설				
	구분	감면대상	기준	감면요율	비 고
	숲속의집, 복합휴양관, 무궁화관	장애인	중증	요금의 50% 할인	비수기 주중에 한함
			경증	요금의 30% 할인	
		국가보훈대상자	1~3급	요금의 50% 할인	
			4~7급	요금의 30% 할인	
		다자녀가정		요금의 30% 할인	
		병역명문가 가족		요금의 30% 할인	
		도민		요금의 20% 할인	
고향사랑 기부자			요금의 20% 할인		
도민대상 및 명예도민		요금의 50% 할인			
청남대	[별표 1]의 입장요금에서 1천원 할인				
	[별표1]				
	구 분	개 인	단 체 및 야간개장 (17:30이후)	비 고	
	어 른	6,000	5,000	19세 ~ 64세	
	청소년	4,000	3,000	13세 ~ 18세	
	어린이	3,000	2,000	7세 ~ 12세	
노 인	3,000	2,000	65세 이상		
군 인 등	4,000	3,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급이 하사 이하인 군인 · 사회복지무요원,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안 제24조)

- 조례안 제24조는 제1항에서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 행사, 공모전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제2항에서 홍보 행사 참여자 또는 공모전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 기념품, 시상금(상품권 포함)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단 시상금(상품권 포함)의 경우 공모전 수상자에게만 제공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두어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음.

다. 종합 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고향사랑기부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기부자 예우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과 홍보 행사, 공모전 등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독려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특별한 이견 없음.
- 다만 효과성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정된 사항이 시행된 이후 기부자 예우 및 홍보 행사, 공모전 등의 운영 결과 분석, 참여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및 제2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기부자에 대한 예우) ① 도지사는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우할 수 있다.

1. 기부자 우대를 위한 기부 증서 발급
2. 충청북도에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등 감면
3. 충청북도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 초청
4. 그 밖에 기부자 예우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부자 예우대상, 기부 증서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기부제도 활성화) ① 도지사는 고향사랑 기부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 행사, 공모전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홍보 행사 참여자 또는 공모전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거나 기념품, 시상금(상품권 포함) 등

을 제공할 수 있다. 단, 시상금(상품권 포함)은 공모전 수상자에게만 제공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북도 조령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충청북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자가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경우 제2항 시설사용료 감면을 별표 2 감면대상에 “고향사랑 기부자”를 신설한다.

②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충청북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자가 입장하는 경우: 별표 1의 입장요금에서 1천원을 할인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제23조(기부자에 대한 예우) ① 도지사는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우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부자 우대를 위한 기부 증서 발급 2. 충청북도에서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등 감면 3. 충청북도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 초청 4. 그 밖에 기부자 예우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② 제1항에 따른 기부자 예우대상, 기부 증서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p> <p>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u><신 설></u></p>	<p>제24조(기부제도 활성화) ① 도지사는 고향사랑 기부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 행사, 공모전 등을 개최할 수 있다.</p>

현행	개정안
	<p>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홍보 행사 참여자 또는 공모전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거나 기념품, 시상금(상품권 포함)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단, 시상금(상품권 포함)은 공모전 수상자에게만 제공한다.</p>

충청북도 조령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별표 2]

시설사용료의 감면율(제12조2항 관련)

구분	감면대상	기준	감면요율	비 고
숲속의집, 복합휴양관, 무궁화관	장애인	중증	요금의 50% 할인	비수기 주중에 한함
		경증	요금의 30% 할인	
	국가보훈대상자	1~3급	요금의 50% 할인	
		4~7급	요금의 30% 할인	
	다자녀가정		요금의 30% 할인	
	병역명문가 가족		요금의 30% 할인	
	도민		요금의 20% 할인	
	고향사랑 기부자		요금의 20% 할인	
	도민대상 및 명예도민		요금의 50% 할인	

관련법령 발췌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시행 2023. 7. 1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향사랑 기부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지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모금을 통하여 취득하는 금전을 말한다.
2.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 정보통신망의 이용, 그 밖의 방법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제공하여 줄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7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를 통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을 할 수 없다.

1. 개별적인 전화, 서신 또는 전자적 전송매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전자적 전송매체를 말한다)의 이용
2. 호별 방문
3. 향우회, 동창회 등 사적인 모임에 참석·방문하여 적극적으로 기부를 권유·독려하는 방법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3. 7. 4.]

제3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 및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2. 고향사랑 기부금의 사용 용도
3.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절차 및 방법
4.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의 제공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과 관련된 중요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홍보매체를 말한다.

③ 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모임이나 행사에 참석·방문하여 적극적

으로 기부를 권유·독려하는 방법을 말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제도 인지도 제고 및 모금 증대를 위한 홍보 행사 및 공모전 등을 추진하여 충청북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도모

2. 비용발생 요인

- 홍보 행사 및 공모전 개최

3. 관련조문

- 조례안 제24조(기부제도 활성화)

4.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재정수반요인 : 기부 활성화 홍보 행사 및 공모전 개최
- 추 계 기 간 :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나. 추계결과

- 추 계 결 과 : 85,000천원
 - 기부활성화 홍보 행사 : 75,000천원
 -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10,000천원
- 재원조달방안 : 도비

5. 연도별 비용추계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출	17,000	17,000	17,000	17,000	17,000	85,000
기부활성화 홍보 행사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75,000
아이디어 공모전	2,000	2,000	2,000	2,000	2,000	10,000
재원조달(도비)	17,000	17,000	17,000	17,000	17,000	85,000

6. 작성자 : 행정국 도민소통과장 이택수